

 보건복지부 MINISTRY OF HEALTH & WELFARE	보도자료	자료배포일	5월 31	매 수	총 2 매
		보도일시	8 월 19일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		
	보건자원과	과 장	서신일	☎	503-7547
		담 당	정은영	☎	503-7554

농어촌 지역병원 병상확충 및 기능보강 용자사업(농특) 용자조건 변경 시행

<주요 내용>

□ 보건복지부는 농어촌 지역병원 병상확충 및 기능보강 용자사업(농특)에 대해 농어촌지역 의료기관의 취약한 경영 실정을 반영하여 용자조건(금리인하 및 거치기간 연장)을 변경하고 이를 2004.9.1부터 시행할 계획임

□ 보건복지부는 '95년부터 농어촌지역 소재 민간의료기관에 대하여 부족한 병상확충, 노후의료시설 개보수 및 의료장비 보강을 위한 용자사업(농특)을 수행하고 있음.

□ 이들 농어촌지역 민간병원의 경우 의료취약 지역내에서 의료보호환자 진료 등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역할까지 담당하여 왔으나 의료인력 이직 증가, 농어촌 인구격감, 의료환경 변화 등 의료수요 감소로 인한 경영난으로 각종 용자금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임.

□ 따라서, 보건복지부는 이들 농어촌지역 의료기관의 어려운 실정을 감안하여 금리를 현재 연리 5.5%에서 4%로 인하하고, 군지역(도농통합시안의 읍·면지역 포함) 소재 민간병원에 대해서는 거치기간을 현재 5년거치 10년상환에서 8년거치 10년상환으로 연장하도록 융자조건을 변경하고 이를 2004.9.1부터 시행할 계획임.

□ 금번 금리인하로 현재 농특 지원을 받고 있는 전체 217개 의료기관에 대해 연 14억원의 금리인하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, 또한 거치기간 연장 대상인 59개 민간병원의 경우 연55억원의 상환유예 효과로 농어촌 의료기관의 어려움 경감과 향후 농특 융자사업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됨.